

무선설비규칙 일부개정령안

1. 제안이유

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무선국의 송신설비와 동일한 통신방식(LTE)을 이용하는 통합공공망용 무선국의 송신설비에 대해 무선국 검사 시 동일한 기술기준을 적용하여 무선국 검사업무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안테나공급전력 허용편차 통합공공망 항목 신설(안 [별표 6] 제7호 신설)
무선설비규칙 제9조(안테나공급전력 등)제1항 본문 관련, [별표 6] 안테나공급전력 허용편차 송신설비란 제7호에 통합공공망용 무선국의 송신설비 항목 신설

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 호

무선설비규칙 일부개정령안

무선설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6 제7호의 송신설비란에 “바. 통합공공망용 무선국의 송신설비” 항목을 신설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		개정안		
[별표 6] 안테나공급전력 허용편차(제9조제1항 본문 관련)			[별표 6] 안테나공급전력 허용편차(제9조제1항 본문 관련)		
1 ~ 6. (생략)			1 ~ 6. (현행과 같음)		
송신설비	허용편차		송신설비	허용편차	
	상한 퍼센트	하한 퍼센트		상한 퍼센트	하한 퍼센트
7. 다음 각 목의 송신설비 가. 아마추어국의 송신설비 나.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무선국의 송신설비 다. 위성방송보조국의 송신설비 라. 신고하지 않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의 송신설비 마. 주파수공용통신(TRS) 무선국의 송신설비 <u>바. <신 설></u>	20	-	7. 다음 각 목의 송신설비 가. 아마추어국의 송신설비 나.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무선국의 송신설비 다. 위성방송보조국의 송신설비 라. 신고하지 않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의 송신설비 마. 주파수공용통신(TRS) 무선국의 송신설비 <u>바. 통합공공망용 무선국의 송신설비</u>	20	-
8. 그 밖의 송신설비	20	50	8. 그 밖의 송신설비	20	50
부칙 <u><신 설></u>			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		